

## 간중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조문대비표('22.4.13.)

영역 (항목)	내용	현행	변경	비고
제4장 제12조 (체험학습)	①항 수정	~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, 교외 체험학습을 ~	~ 동의를 얻어 <u>개인교환학습, 단체교환학습</u> , 교외체험학습을 ~	2022학년도 체험 학습(개인, 단체 교환학습, 교외체험 학습 등) 운영 계획에 맞게 수정
	⑤항 수정	~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~	~ 교외체험학습은 <u>연 (30일 이내) 로 사용가능하며</u> , 감염병 위기경보 ~	
제4장 제15조 (차별금지)	제15조 추가	없음	<p><u>제15조(장애학생의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)</u></p> <p>① <u>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, 전학 강요, 전입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② <u>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③ <u>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의 제한이나 배제,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④ <u>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자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,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⑤ <u>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,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.(다만,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)</u></p>	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(차별의 금지)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(차별금지)에 대한 기준 추가